

5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

□ 과세방법 **법인세 규정 준용**

-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하는 경우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나,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적용

□ 과세표준 **[지법 § 103조의47] 법인세 규정 준용**

-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**법법 §93조제3호의 부동산소득***이 있는 외국법인
 - [법법 §91조①]에 따라 계산한 금액
 - 단,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

과세표준 =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 - 이월결손금 - 비과세소득 - 상호면제되는 외국 항행소득

* 법법 §93조제3호에 따른 소득 :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, 조광권, 토사석, 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·이용권의 양도·임대 또는 그 밖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. 단, 동법 7호 소득(양도소득)은 제외

-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
 - [법법 §91조②]에 따라 계산한 금액
 - 단,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

과세표준 = 법법 §93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

-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중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
 - [법법 §91조③]에 따라 계산한 금액
 - 단,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

과세표준 = 법법 §93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

*법법 §98조①, §98조의3, §98조의5, §98조의6

□ **세액 계산 및 국내원천소득의 구분** [지법 § 103조의47⑤] **법인세 규정 준용**

-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, 국내원천소득의 구분,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사항은 [법법 §92부터 §94]까지 준용

□ **세율** [지법 § 103조의48]

- 법법 §93조제7호(양도소득)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1% ~ 2.2% 세율을 적용
 - 지법 §103조의 49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

□ **토지 등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특례** [지법 § 103조의49]

- 내국법인 세액계산(지법 §103조의 21)을 준용하여 계산
 - 단,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법법§92조의③ 준용하여 계산

□ **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** [지법 § 103조의50]

- 영리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[법법§96]에 따라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의 10분의 1을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
 - 단,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법법§92조의③ 준용하여 계산

□ **신고 · 납부** [지법 § 103조의51] **법인세 규정 준용**

- [법법§93조제7호]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및 [법법§97]준용

□ **신고기한 연장** [지법 § 100조의27] **법인세 규정 준용**

-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
 -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 승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봄
 - 기한연장일수 1일당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

□ **유가증권 양도소득 등 신고·납부 특례 [지법 §103조의51⑤] 법인세 규정 준용**

○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

-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동일한 사업연도(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)에 2회이상 양도함으로써
-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 양도당시 특별(원천)징수되지 않는 소득

| | |
|-----------|---|
| 관계 법령 | [법법 §98조의2①, 지령 §100조의 28제1호] |
| 신고납부 |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(국세 신고납부 + 1개월) |
| 서식 |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[별지 제45호의 2 서식] |
| 납세지 |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|
| 과세표준 및 세율 | 신고·납부할 법인세의 10% |

※ 국내사업장이 있으나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도 준용

○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

- 주식·출자증권, 그 밖의 유가증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양도 하는 경우로서
- 조특령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주식 등 유가증권인 경우
- 또는 외국에서 거래되는 원화표시 유가증권(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)인 경우
- 단, 특별(원천)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제외

| | |
|-----------|---|
| 관계 법령 | [법법 §98조의2③, 지령 §100조의28제2호] |
| 신고납부 | 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(국세 신고납부 + 1개월) |
| 서식 |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 [별지 제45호의3 서식] |
| 납세지 | 해당 주식 등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|
| 과세표준 및 세율 | 신고·납부할 법인세의 10% |

○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

- 국내에 있는 자산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소득이 발생하는 경우
- 단, 특별(원천)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제외

| | |
|-----------|--|
| 관계 법령 | [법법 §98조의2④, 지령 §100조의28제3호] |
| 신고납부 |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까지 신고납부(국세 신고납부 + 1개월) |
| 서식 |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[별지 제45호의4 서식] |
| 납세지 | 해당자산의 소재지 (유가증권의 경우 발행 내국법인의 소재지) |
| 과세표준 및 세율 | 신고·납부할 법인세의 10% |

□ **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·납부 특례** **자법§103조의5⑤** **법인세 규정 준용**

○ [법법§93조제6호]에 따른 영화·연극 배우, 직업운동가, 변호사 등 인적용역 소득이 특별징수되는 외국법인은

- 기 특별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
- 아래와 같이 신고·납부 가능

| | |
|-----------|--|
| 관계 법령 | [법법 §98조 제6호, 지령 §100조의29] |
| 신고납부 |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|
| 서식 |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 [별지 제45호의5 서식] (첨부)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 |
| 납세지 |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|
| 과세표준 및 세율 |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(소득-관련비용) * 법인지방소득세 세율(1 ~ 2.2%) |

□ **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** **자법§103조의6②** **법인세 규정 준용**

○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[법법§98부터§98조의6까지]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

- 그 법인세의 10%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함
- [법법§98조부터 §98조의6] 준용